

**리오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
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개요**
〈 1992. 6. 13〉

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개요

1. 유엔 기후변화 협약

① 명칭 및 구성

-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
-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
- 본문 (전문 및 26개조) 및 2개 부속서

② 기후변화협약 추진배경

- 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
 -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기후변화의 악영향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 인정
- 88. 11. UNEP와 WMO 공동주관하의 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(IPCC)” 설립
 - 92. 2까지 7차회의 개최
- 90. 11. 제2차 세계기후회의 (제네바)
 -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 제정합의
- 90. 12. 기후변화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(INC) 개최 결의
 - 유엔총회결의 45/212로 92. 6. UNCED 이전 기후변화 협약 제정결정

③ 정부간 협상위 개최 경위

- 제1차 협상위원회 (91. 2. 4~14. 워싱턴)
 - 의장단 결정 및 각국 기본입장 청취
- 제2차 협상위원회 (91. 6. 19~28. 제네바)

- 각실무위구성 각국입장 청취
- 제3차 협상위원회 (91. 9. 9~20. 케냐 나이로비)
 - 일본의 P.R방식과 EC의 Unilateral Commitment 관련토의
- 제4차 협상위원회 (91. 12. 9~20. 제네바)
 - 3차까지 회의를 토대로 의장단이 마련한 초안검토
- 제5차 협상위원회 1부 회의 (92. 2. 18~28. 뉴욕)
 - 4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협약초안의 주요쟁점 조문에 대한 토의
- 제5차 협상위원회 2부회의 (92. 4. 30~5. 9 뉴욕)
 - 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 (92. 5. 9)
- 92. 6. 6, UNCED 회의기간 중 서명을 위해 개방
 - () 개국 서명

2. 주요 내용

- 전문
 - 온난화가스배출에 대하여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지며,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온난화 가스배출 증가 예상
 - 각국의 차별적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온난화 방지협력
 -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정
- 정의 (제1조)
 - 기후변화, 배출, 온난화가스, 흡수, 배출원등 정의
- 목적 (제2조)
 - 대기중 온난화가스 안정화
- 기본원칙 (제4조)
 - 차별적 책임과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 보호

- 개도국의 특수사정 고려
- 지속개발 권리보유와 증진
- 공 약 (4조)
 - 모든 당사국 의무
 - 온난화가스배출과 흡수목록의 작성 및 가입국회의 제출
 - 온난화가스배출 축소기술과 관습, 절차의 개발 및 이전, 증진
 - 흡수원의 보존관리
 - 과학기술 요구 및 체계적 관측과 정보교류
- 선진국의 의무
 - 온난화가스배출이 초기단계로 복귀될 수 있음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정책추진
 - 협약가입 6개월내 협약관련 이행사항 통보
 - 추가적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증진조치 시행
- 소도서국, 저지국, 화석연료과다의존 개도국에 대한 특수사정 고려
- 연구 및 체계적 관측 (5조)
- 교육, 훈련 및 홍보 (6조)
- 가입국회의 (7조)
 - 협약 최고기관으로 최소 연 1회 개최
 - 협약이행평가, 재원모집 및 부속기관 설치 관리
 - 운영절차 및 재정규칙 채택
- 사무국 (제8조)
 - 가입국총회 개최지원 및 각국통보자료 편집
- 과학기술자문산하 위원회 (제9조)
 - 가입국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에 과학기술조언
- 재정체계 (제11조)
 - GEF 및 여타 국제기금관련 기관을 이용하되, 상 세사항은 1차 가입국 회의에서 결정
- 기 타
 - 분쟁해결, 개정, 투표권, 가입, 탈퇴등 규정

3.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

① 명칭 및 구성

- 생물학적 다양성협약
-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

- 본문(전문 및 42개조) 및 2개 부속서

② 추진배경

-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확산
- 인간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 인식
-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인식
- 후진국들의 자국소유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인식
- 유전공학의 적절한 관리 요청

③ 추진경위

- UNEP 집행이사회, 협약제정 특별실무위 개최결정 (87.6.17)
 - 국제자연보존 연맹(IUCN) 건의에 따라 결정
- 제1차 특별실무위원회 (88.11.16~18 제네바)
- 제2차 특별실무위원회 (90.2.19~23 제네바)
- 제3차 특별실무위원회 (90.7.9~13 제네바)
- 생물학적다양성에 관한 법률 및 기술전문가 그룹 1차 회의 (90.11.9~23 나이로비)
 - 협약초안 검토
- 생물학적다양성 협약 제3차협상회의 (91.6.24-7.3 마드리드)
 - 91.5, 16차 UNEP 집행위원회에서 상기법률 및 기술전문가 그룹 회의의 명칭변경
 - 1차 개정안 검토
- 생물학적다양성협약 제4차협상회의 (91.9.23~10.2 나이로비)
 - 2차 개정안 검토
- 생물학적다양성협약 제5차협상회의 91.11.25~12.4 제네바)
 - 3차 개정안 검토
- 생물학적다양성 협약 제6차 협상회의 (92.2.6~15 나이로비)
 - 제4차 개정안 검토
- 생물학적다양성협약 제7차 협상회의 (92.5.11~15 나이로비)

- 협약교섭 최종회의 제5차 개정안 검토
- 전권대표회의 (92.5.18~20 나이로비)
 - 협약채택 (92.5.23)
- 92.6.5 UNCED 회의 기간중 협약서명 개방
 - () 개국 서명

4. 주요내용

- 전 문
 - 생물다양성보존은 인류공동의 관심
 - 새로운 추가적 재원 및 관련기술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특별규정 필요
- 목 적 (제1조)
 - 생물다양성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
 -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형평한 배분
- 용어의 정의 (제2조)
 - 생물다양성, 생물자원, 생명공학, 현지보존, 현지외 보존 등 정의
- 원칙 (제3조)
 - 각국의 환경정책에 따른 자원개발 주권
 - 타국의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
- 관할범위 (제4조)
 - 국가관할권내
- 협력 (제5조)
 - 국제기구를 통하여 직·간접적으로 협력
-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 (제6조)
 -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·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
- 조사와 감사 (제7조)
 - 생물다양성요소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과정의 조사와 감시
- 현지보존 (제8조)
 -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
 - 생태계보호와 보호구역 인근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증진
 - 외래종의 통제와 유입방지
- 현지외 보존 (제9조)

- 현지의 보존조치 채택과 현지의 보존 시설 설치관리
- 현지의 보존을 위한 생물자원수집의 규제 및 관리
- 생물다양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(제10조)
 - 생물다양성에의 악영향 축소조치 채택
 - 전통적 문화관습에 따른 생물자원의 전통적 이용 장려
- 인센티브 조치 (제11조)
 - 생물다양성 요소의 보존과 지속이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제도 채택
- 연구와 훈련 (제12조)
 - 생물다양성의 조사, 보존 및 지속이용에 관한 과학 기술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설치와 유지
 - 관련기술연구증진과 과학적 진보의 이용을 위한 협력
- 공공교육과 홍보 (제13조)
 -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제고
- 영향평가 및 악영향 최소화 (제14조)
 - 생물다양성에 악영향 초래가능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 수립
 - 악영향초래 가능 활동에 관한 통보 및 정보교환
- 유전자원접근 (제15조)
 - 각국은 천연자원주권에 따른 유전자원접근 결정권 보유
 - 접근은 본 협약규정에 따른 상호합의에 의함
 - 각당사자는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을 유전물질제공국과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입법적·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함
- 기술접근 및 이전 (제16조)
 - 각 당사국은 기술접근과 이전이 협약목적의 달성에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술접근과 이전을 수행
 - 개도국에 의한 접근과 이전은 양역적 및 특혜적 조건을 포함한 공평하고 선호적 방법으로 실시됨.
 - 유전물질 제공국의 기술접근 및 이전을 위해 입법적·행정적 정책적 조치 채택
 - 사적부분의 공동기술 개발과 이전증진을 위한 조치 채택

- 지적소유권이 협약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, 그러한 권리가 협약 목적을 역행하지 않도록 행사하도록 협력
- 정보교환 (제17조)
 - 과학기술정보, 훈련 및 특별사업 정보 등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이용관련 정보의 교환
- 기술 및 과학적 협력 (제18조)
 - 각당사자는 과학기술협력 증진
 -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Clearing-house 메카니즘 설립 방안 결정
- 생명공학 관리 및 그이익 배분 (제19조)
 - 유전물질 제공국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보장 조치
 - 유전물질 제공국의 생명공학이익 접근과 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
 - 변형생물체 (GMO)의 안전이전, 취급 및 이용분야의 절차 마련 필요성 검토
 - 변형 생물체의 제공자는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
- 재원 (제20조)
 -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추가적 재원제공
 - 제1차 당사국 회의는 선진국 및 자발적 기여금 납부 국가 목록 작성
 - 개도국의 협약이행은 선진국의 재원관련 공약의 효과적 이행에 달림
 - 최빈국 및 소도서국의 특수사정과 필요 고려
- 재정체제 (제21조)
 - 개도국에 대한 양여적 재정지원체제 수립
 - 제1차 당사국회의는 재정체제 운용기구, 정책, 전략 등 결정
 - 기존재정 기구의 강화 고려
- 당사자 회의 (제23조)
 - 정기회의는 제1차 당사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주기로 정기적 개최
 - 임시회의는 가입국 1/3 찬성으로 개최
 - 당사자 회의는 각종의 사절차 채택과 협약이행 관리 검토

- 과학기술 및 기술적 자문 부속기관 (제25조)
 - 당사자 회의에 협약이행에 관한 과학·기술적 자문
- 보고 (제26조)
 - 각당사국은 당사자회의에 협약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
- 의정서 채택 (제28조)
 - 당사자 총회에서 채택
- 발효
- 협약 및 의정서 개정
 -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하되, 불가능할 경우 2/3 다수결로 채택 발효
 - 30번째 비준서, 수락서,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90일째 발효



최근 先進國들을 중심으로 地球環境保護 차원에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, GR, ISO 9000, 14000등 哥板紙包裝產業의 經營革新 및 신제품, 新需要 개발이 절실한바, 哥板紙包裝組合主管 產業研究院에서 펴낸 『2000年代 哥板紙包裝產業의 發展戰略』 研究報告書.

〈韓國哥板紙包裝組合 編輯室〉

(가격 : 8,000원)